

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3-47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02. 10. 18.

제출자 : 파주시장

제안이유

- 파주시 및 파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소송수행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는 물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본안사건(행정·민사소송)인 경우 포상금 지급액을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1인당 30만원 이내로 하고, 소액사건 및 신청사건은 1인당 2만원 이내에서 5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함.(안 제5조제1항)

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“10만원”을 “30만원”으로 하고 “2만원”을 “5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| | |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소관 실·과·소 | | 기획담당관실 ☎ 940-4091 |
| 입안자 | 기획 담당관 | 박헌재 |
| | 법무 담당 | 정명기 |
| | 담당자 | 김진우 |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(안) |
|--|---|
| <p>제5조(포상금 지급액) ① 생략</p> <p>1.본안사건(행정·민사소송) : 1인당 <u>10만원</u>이내. 다만, 소액사건심판법 에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<u>2만원</u>이내</p> <p>2.신청사건(행정·민사소송) : 1인당 <u>2만원</u> 이내</p> | <p>제5조(포상금 지급액) ① 현행과 같음</p> <p>1. ----- <u>30만원</u>----- -----<u>5만원</u>---</p> <p>2. ----- <u>5만원</u> --</p> |